

# 工業所有權 4法の 目的

## 特許

**第1條(目的)** 이 법은 發明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本條는 이 法律의 目的, 나아가서는 特許制度의 目的을 나타내고 있는 條文이다. 따라서 本條는 特許法內의 다른 모든 法律規定을 支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支配從屬關係에서 오는 당연한 歸結로서 다른 모든 條文의 解決根據가 되며, 또한 特許制度 運營에 있어서도 基本指針 내지는 方向을 設定한다고 할 수 있다.

條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本條는 特許法 또는 特許制度를 마련함으로써 微視的으로는 發明을 獎勵, 保護, 育成하여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巨視的으로는 國家 産業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特許法은 一 發明에 대한 獨占의 權利의 附與와 發明의 公開라는 서로 反對되는 方向의 두 가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새로운 技術을 發明하여 特許出願을 한 자에게는 一定期間 一定한 條件을 業으로 그 發明을 獨占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權利(特許權)를 附與하고, 다른 쪽으로는 一般에 널리 그 發明을 公開함으로써 發明을 利用(그 發明을 基礎로 하여 다른 發明을 創出하거나 特許權者의

許諾을 얻어 發明을 實施하는 등 形態에 구애되지 않는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마꾸어 말하면 特許法이 새로운 技術의 創案에 대하여 權利를 준다는 것은 技術의 創案者, 즉 發明者의 努力에 대하여 國家가 적극적으로 制度를 마련하여 代價를 保障해 줌으로써 發明을 獎勵·保護·育成하는 것이고, 한편 이러한 技術을 公衆에 널리 알린다는 것은 發明을 利用·擴大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함으로써 技術의 進歩發展, 나아가서는 國家 産業發展에 寄與하려는 것이며, 그 속에는 發明者와 公衆의 利害를 有效適切히 調整하고자 하는 衡平의 精神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 實用新案

**第1條(目的)** 이 법은 實用的인 考案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를 圖謀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本條項은 이 法의 目的을 表示한 것으로서 이 法律의 다른 條項은 결국 本條項에 規定하는 目的에 歸一하는 것이고, 各條項의 解釋도 本條項의 趣旨가 參照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實用新案은 그 保護의 對象이 考案(따라서 方法은 實用新案으로는 保護받을 수 없음)이다.

이같이 實用新案을 考案으로 限定하는 것은 技術思想인 考案을 保護한다는 見地에 徹底하면 容易한 것이나 實用新案制度의 오랜 運用에 의해 實用新案의 觀念이 一般的으로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그 事實을 尊重하고 함부로 實用新案의 對象인 考案의 範圍를 擴大시키지 않도록 한 것이나 또 特許法에서는 技術의 思想의 創作 중 高度의 것만을 發明으로 定義하고 있으나 이 法律은 그와 같은 定義가 아니고 技術의 思想의 創作으로서 物品의 形狀, 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考案이면 그 程度를 不問하

고 獨占權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條項은 實用新案法の 目的을 明記한 것으로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이 法律의 全規定이 適用·解釋된다는 것을 明確히 한 것이다. 이 法律에 의한 實用新案制度는 考案의 實施를 獨占의 으로 하는 것을 保障하므로써 技術的 考案의 生成을 促進해서 技術水準의 向上을 圖謀하고 또한 企業間의 競爭을 調整하는 役割을 한다. 後者의 機能은 그러한 結果로서 技術의 進步를 圖謀하여 産業의 發展에 寄與케 한다는 것으로서 現在까지의 實用新案制度의 意義를 特許法에 있어서의 保護가 高度의 技術的인 發明에 限定한 것에 생기는 不均衡을 調整하는 點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實用新案法에 의한 保護의 對象인 考案에 關해서도 그 一般的인 水準向上이 바람직한 것이다.

## 意 匠

**第1條(目的)** 이 法은 意匠考案의 保護 및 利用을 圖謀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獎勵하여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工業所有權法은 모두 産業上의 特殊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産業立法이기 때문에 第1條에 立法의 目的을 闡明하고 있다. 意匠法에 있어서도 第1條는 意匠法의 立法趣旨를 要約表明하고 있는 바, 따라서 同法文은 意匠法 全般에 대한 包括的 解釋基準이며 또한 具體的인 實際狀況에 있어서도 그 方向을 결정짓는 基本的인 判斷基準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同法文은 다분히 宣言的(프로그램) 規定이기 때문에 이 法文을 他意匠法의 解釋基準으로 삼거나 혹은 具體的 實際狀況에서의 判斷基準으로 삼기 위해서는 同法文의 解釋에 있어 慎重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意匠法 第1條의 構成을 살펴보면 (意匠考案의 保護 및 利用圖謀)→(意匠의 創作獎勵)→(國家産業의 發展)이라는 3段階의 理論展開를

趣하고 있다. 여기서 注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意匠考案의 保護 및 利用圖謀)는 분명히 私益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國家産業發展)이라는 公益의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나 하는 點이다. 一見 위와 같은 論理는 상당히 矛盾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왜 意匠考案의 保護 및 利用”이 “國家産業의 發展”을 가져오는가 하는 理由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理由를 어떻게 展開하느냐에 따라 意匠法 全體에 얽힌 諸問題 즉, 意匠의 類否判斷의 主體, 觀察方法, 要部判斷, 物品의 類似範圍 등이 모두 相異點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서는 例外的으로 同法文中 “保護 및 利用”이란 用語의 解釋을 通하여 上記의 問題點을 解決하려는 見解도 있지만 一般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類形이 있다.

첫째 論理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意匠考案을 함에 있어서는 開發費用과 時間이 所要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意匠이란 物品의 外觀이기 때문에 一見하여 模倣이 可能하다. 따라서 新規한 意匠考案을 한 者를 保護해 주지 않는다면 自由競爭市場에 있어서는 意匠의 創作開發費用을 負擔한 者가 그것을 模倣하는 者에 비하여 현저히 不利하게 된다. 이러한 現狀을 放置한다는 것은 他의 創作을 模倣하여 不正競爭行爲를 일삼는 不當行爲를 助長하는 結果를 招來함과 同時에 新規한 考案을 하고자하는 意慾을 꺾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不正競爭을 防止하여 意匠考案을 保護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獎勵해 주어야 하는 理由가 된다고 보는 立場이다. 여기에는 다시 디자인이 模倣내지는 盜用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創作·考案者 爲主의 主張과 不正競爭行爲의 結果 類似品이 난무함으로써 消費者가 不良粗惡品을 사거나 혹은 商品의 出處를 混同하는 結果를 防止해야 한다는 需要者 爲主의 主張이 있다.

한편 두번째의 論據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企業間에 技術的인 隔差가 거의 없는 産業分野일수록 디자인이 重要하다는 것은 常識的인 일이다. 예컨대 自動車에서 内部機械는 同一해도 디자인을 一定한 週期로 바꾸어야만 販賣增大效果를 가져온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新規하고 優秀한 디자인의 創作이 많이 나올수록 國家經濟 規模面에서 불래 消費가 增大된다.」

따라서 이 見解에 의하면 意匠의 創作獎勵는 不正競爭行爲를 防止한 結果 間接的으로 産業發展의 效果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需要增大를 創出하여 經濟規模의 擴大膨脹을 가져온다는 論理를 展開한다. 이상과 같이 이 두가지 見解는 나름대로의 長短點이 있지만 어느하나가 더 上位에 있다기 보다는 意匠法上「産業發達」이라는 概念의 解釋에 있어 積極的인 면과 消極的인 면을 동시에 커버한다고 봄이 妥當하다.

즉, 前者의 見解는 不正競爭防止效果를 통한 經濟的 質的發展을, 後者의 見解는 需要增大로 인한 經濟規模의 量的發展을 圖謀하여 結果的으로는 國家産業에 寄與한다고 보아야 한다.

綜合的으로 불래 바람직한 意匠法 第1條의 解釋方法 및 實際狀況에의 適用方法은 어느 하나의 意見에 固定的으로 짐착하기 보다는 産業分野의 特性과 當該意匠이 表現된 物品의 性質을 살피 法的 安定性을 지키는 範圍內에서 具體的 妥當性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意匠의 審査 및 審判業務는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더욱 審査官 및 審判官의 判斷裁量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한편 公定性 維持를 위하여 보다 더 詳細하고 合理的인 審査, 審判指針이 마련되어야 한다.

〈外國의 立法例〉

우리나라와 같이 意匠法 第1條에 立法趣旨를 전제하고 있는 立法例는 日本이 있다. 英國에서는 意匠法이 著作權法의 特別法으로 存在하고 있으며, 獨逸과 프랑스에서는 意匠保護제도 가 상당히 著作權法에 가깝고, 미국에서는

特許法案에 包含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立法形態를 趣하고 있지는 않다.

商 標

第1條(目的) 이 법은 商標를 保護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業務上의 信用維持를 도모하여 國家産業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需要者의 利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本條는 商標法의 目的을 規定한 것이다. 商標制度는 國內에서 商標를 使用하는 者 또는 使用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商標를 權利로서 認定해서 指定商品에 獨占排他的으로 使用케 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立場에서는 商品에 使用한 商標가 그 本質的 機能을 발휘하므로써 形成된 業務上의 信用을 保護維持토록함과 同時에 需要者의 立場에서는 이와같이 信用이 蓄積된 商標를 媒介로 自己가 원하는 優秀한 商品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 商品出處와 品質에 대한 誤認·混同을 예방하게 함으로써 需要者의 商品에 대한 信賴利益을 保障받게 되며 또한 商品의 去來秩序가 圓滑하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國家의 立場에서는 이러한 健全한 流通秩序를 통하여 國家産業의 全般的인 發展에 寄與하게 된다.

이와같이 商標制度는 商標를 保護하므로써 商標使用者의 信用維持, 需要者의 利益保護 및 國家産業의 發展이라는 3가지 目的을 調和的으로 達成코자 하는 것으로 特許, 實用新案, 意匠과는 다른 性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商標法을 解釋, 運用함에 있어서는 商標制度가 追求하는 이러한 指導理念에 符合되는 合目的的인 判斷이 필요하다. <계속>

분수지켜 알뜰가정  
 질서지켜 사회안정  
 좌의실상 바로 알고  
 자유민주 수호하자